

#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2002· 7· 15 규칙 제244호  
 개정 2003· 7· 16 규칙 제261호  
 개정 2004· 6· 21 규칙 제275호  
 개정 2006· 11· 16 규칙 제341호  
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)  
 일부개정 2011· 7· 8 규칙 제444호  
 일부개정 2014· 9· 12 규칙 제520호  
 (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  
 일부개정 2019· 1· 1 규칙 제645호  
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20· 12· 29 규칙 제691호  
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23· 3· 6 규칙 제743호  
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선정인원)**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천시도자기명장(이하 “명장”이라 한다)은 당해 연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1· 7· 8>

**제3조(선정)** 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3· 7· 16>

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,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4· 6· 21>

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· 선정기준· 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,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선정기준)**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

2.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
3.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
4.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
5.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

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명장신청)**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·면·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장추천서 [별지 제1호서식] 1통
2. 공적조서 [별지 제2호서식] 1통
3. 삭제 <2014·9·12>
4. 경력증명서 [별지 제3호서식] 1통
5.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 [별지 제4호서식] 1통
6.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

**제6조(심사위원회)**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.  
<개정 2006·11·16, 2019·1·1, 2020·12·29, 2023·3·6>

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
**제7조(심사결과의 통보)** 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. <개정 2011·7·8>

**제8조(연구 활동비 지급)**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,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

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·7·8>

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·7·8>

[본조신설 2004·6·21]

[제목개정 2011·7·8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·7·16 규칙 제26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·6·21 규칙 제275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칙 <2006·11·16 규칙 제341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부칙 <2011·7·8 규칙 제44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규칙 제645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**제3조 생략**

**제4조 생략**

**제5조 생략**

**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**

⑪ 「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⑫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20·12·29 규칙 제691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** 「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23·3·6 규칙 제743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**

⑫ 「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예관광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



주요 학력 및 경력			
(17) 년 월 일	(18) 이 력	(19) 년 월 일	(20) 이 력
과거 포상 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
(21) 년 월 일	(22) 내 용	(23) 년 월 일	(24) 내 용
(25) 공 적 사 항			





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5호서식]

제 호

## 이천시도자기명장증서

분야 :

소 속

성 명

귀하는 이천시 도예인의 최고 영예인 도자기명장으로 선정되었기 “이천시도자기명장”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천 시 장



[별지 제7호서식] <신설 2004·6·21, 개정 2014·9·12>

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					사진 (3×4)
①성 명		②생 년 월 일			
③주 소		④전 화 번 호			
⑤명장선정년도		⑥선정구분			
⑦지급계좌					
⑧지급상황기록					
회	년	월	일	지 급 액	확 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계					

210mm×297mm